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재혁신센터·해외인재유치센터
보고기능 및 연계 강화 등〉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70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인재혁신센터 및 해외인재유치센터의 보고기능 강화	2
2. 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 구성·운영	5
3. 지역인재 확보사업 추진시 연구기관 포함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태년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22.
3. 회부연월일 : 2025. 10.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외인재 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인재유치센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성화와 해외인재 유치 업무는 그 업무계획의 수립이나 구체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연계하여 운영할 때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업무협의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센터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 구성·운영,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 및 해외인재유치센터의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와 관련해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및 활용 효과를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인재혁신센터 및 해외인재유치센터의 보고기능 강화

개정안은 인재혁신센터 및 해외유치센터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업무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29조제4항 신설).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인재혁신센터의 <u>설치</u>) ①·② (생 략) <신 설>	제14조(인재혁신센터의 <u>설치 등</u>)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인재혁신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 무의 추진 상황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 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제29조(해외인재유치센터의 <u>설치</u>)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9조(해외인재유치센터의 <u>설치 등</u>)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해외인재유치센터는 해외인재 유 치 관련 업무의 추진 상황을 산업통 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u>

인재혁신센터는 현행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에 설치되어

산업계 인재혁신 활동, 기반조성 및 정부 정책검토 등을 지원하고,

해외인재유치센터는 현행법 제29조에 따라 해외인재 유치와 관련된 홍보·안내·조사·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등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에 설치되어 있음.

두 센터는 각각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반본부-산업인재전략실)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글로벌인재실) 내에 설치되어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기관인 산업통상부가 재정경제부와 함께 인사(임원 임면 등), 예산 및 경영평가 등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4조¹⁾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4조(감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제10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 제10조제11호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2.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통상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즉, 현행법령 및 제도에 따라 인재혁신센터와 해외인재유치센터는 산업통상부의 관리감독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으나, 개정안은 산업통상부가 업무추진상황을 직접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여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에 따라 두 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각 공공기관 내 우선순위보다 중앙부처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반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두 센터는 공공기관 내에 설치·운영되는 조직이나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공공기관을 거치지 않고 주무부처에 직접 보고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게 되므로 기존 관리감독체계와의 정합성 및 책임·권한 배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2. 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 구성·운영

개정안은 인재혁신센터와 해외인재유치센터의 연계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안 제21조의2 신설).

[표 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2(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 구성·운영) ① 인재혁신센터와 제29조에 따른 해외인재유치센터의 연계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재혁신센터와 해외인재유치센터는 모두 첨단산업분야의 인재양성 및 공급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해외인재유치센터는 해외인재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인재혁신센터는 첨단산업인재를 국내에서 양성하는 것 외에도 인력수급분석, 통계 작성 등 정부의 정책검토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표 3] 인재혁신센터 및 해외인재유치센터 주요 업무

인재혁신센터	해외인재유치센터
1.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전문기업 등 산업계의 인재 혁신 활동의 지원 2. 산업계 시설의 개방·공유, 생태계 활성화, 인재데이터의 관리·활용 등 기반조성의 지원 3. 제19조에 따른 인력수급분석, 통계 작성 등 정부의 정책 검토 지원 4.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 5. 국내외 인재혁신 조사·연구 및 국제 협력 사업 6.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해외인재 유치와 관련된 홍보·안내·조사·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등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 - (글로벌 인재 발굴) 해외네트워크(거점 무역관)를 활용한 우수 해외인재 탐색 및 발굴 지원 - (K-Tech Pass 발급) 첨단인재 특별비자 및 정주혜택에 필요한 우수해외인재 인증서(K-Tech Pass) 발급 -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K-Tech Pass 발급자 대상 정착 초기 밀착 지원(금융·통신·부동산·외국인학교 관련) - (고용추천서 발급) 특정활동 비자(E-7)에 취득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 지원

자료: 법령정보센터 및 해외인재유치센터(https://www.kotra.or.kr/gtc_kor/index.do) 내 센터 소개

현행 체계상 인재혁신센터와 해외인재유치센터는 각각 다른 공공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를 통해 업무추진방향이 간접적으로 조율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인재혁신센터가 첨단산업인재 양성 및 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인재 유치 현황 및 추진계획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해외인재유치센터는 첨단산업별 인력수급분석 등을 고려하여야 실효성 있는 유치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음.

개정안은 업무협의체를 신설하여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성화와 해외 인재 유치 업무를 상호 연계하고 사업효과를 각각 증대시키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센터간 정보공유 및 사업연계가 면밀하게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통상 협의체는 다수 관계자들간 상호 의견조율이 필요한 경우 설치하는데, 두 개 센터간 상호협의를 위해서 별도로 협의체와 같은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일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4] 협의체 설치 관련 입법례

「항공안전법」 제77조의2(국가항행계획의 수립·시행)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u>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및 관련 전문기관</u>으로 구성되는 <u>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u>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1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협의체의 구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정보교환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u>여러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협의체</u>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정보의 전달 등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의2(협의체의 운영 등) ①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받기 전에 <u>사업시행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u> 등으로 구성된 <u>협의체</u>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지역인재 확보사업 추진시 연구기관 포함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상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에 연구기관도 포함하여 첨단산업분야의 지역인재 확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표 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① -- ----- ----- -----.
1.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한 <u>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u> 과의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1. ----- <u>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u> ----- -----
2. 지역 내 <u>교육기관</u> 과 기업이 연계한 인재양성	2. ----- <u>교육기관 · 연구기관</u> ----- -----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2조는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투자계획과 연계하거나 교육기관-기업간 연계한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협력·연계 대상으로 교육기관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과 연구과제 수행 및 현장실습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데, 법률상 협력·연계 대상에 연구기관이 제외되어 있어 사업²⁾ 실효성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교육기관 외에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첨단산업 지역인재 양성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6

2) 참고로 현재 해당 조문에 따른 예산사업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음.